한국장학재단

우선선발자 및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증빙서류

구분	제출서류
장애인	•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
다자녀가정 자녀 (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)	•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•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다문화가정 자녀	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(외국인등록증) • (인지·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) 기본증명서
탈북가정 자녀	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국가보훈대상자 (본인 및 유가족)	• 국가보훈관계 법령*에 따라 지방보훈청장, 보훈지청장,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(본인, 유가족) 확인서 일체 * 국가보훈기본법, 국가유공자법, 보훈보상자법, 독립유공자법, 5.18유공자법, 특수임무유공자법, 참전유공자법, 제대군인법, 그 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
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	•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• 가족관계증명서
부모 중 한 분이 중증환자인 학생	• 진단서 ※ 보건복지부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의 [별표3] 중증질환자, [별표4] 희귀질환자, [별표4의2] 중증난치질환자, 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함 • 가족관계증명서
학업·육아 병행자	• 가족관계증명서 ※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)
자립준비청년 (舊, 보호종료아동)	•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
청소년쉼터 퇴소 학생	• 청년복지시설 입·퇴소 확인서 ※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,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
가족돌봄청년	•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대상 통지서 ※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(소)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

※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